



제 429회 국회 (정기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투자계약 체결 제한〉

■ 김종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276호)

2025. 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문위원 성 소 미

목 차

I . 제안경 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투자계약 체결 제한	2
2. 부 칙	10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종민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5. 2. 19.
3. 회부연월일 : 2025. 2 .2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벤처투자회사 등록 및 관리규정」 및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중소벤처기업부고시)은 벤처투자회사와 벤처투자조합으로부터 투자받은 기업의 대표, 최대주주 등에게 기업의 투자금 상환 의무 등에 대한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는 투자계약 체결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개인투자조합 및 창업기획자에 대하여는 연대책임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투자받은 기업이 투자금을 상환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기업의 대표, 최대주주 등에게 고의·과실이 없더라도 개인투자조합 및 창업기획자가 그 개인에게 투자금 반환 등을 요구할 수 있어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등의 경영활동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고시에 규정된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의 연대책임 방지 규정을 법률에 상향규정하고, 개인투자조합 및 창업기획자에 대하여도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투자계약 체결을 금지함으로써 건전한 벤처투자 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제4호의2, 제27조제1항제2호의2, 제39조제1항제2호의2, 제52조제2항제4호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투자계약 체결 제한

개정안은 개인투자조합, 창업기획자, 벤처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이 투자한 업체가 부담하여야 하는 의무를 제3자가 연대하여 부담하게 하는 계약 체결 행위를 금지하되, 투자계약에서 정한 선행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금을 납입하게 함으로써 투자의 효력을 발생하게 한 경우, 투자계약에서 정한 진술과 보장 사항이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 투자금의 사용 용도를 위반한 경우, 투자계약에 반하여 이해관계인이 주식을 처분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제3자에게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행위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제4호의2, 제27조제1항제2호의2, 제39조제1항제2호의2, 제52조제2항제4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개인투자조합 업무의 집행 등) ① (생략) ② 업무집행조합원은 개인투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개인투자조합의 자산 운용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제14조(개인투자조합 업무의 집행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4. (생략)

<신설>

5. (생략)

③·④ (생략)

제27조(창업기획자의 행위제한) ① 창업기획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창업기획자의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

1. ~ 4. (현행과 같음)

4의2. 투자계약에 따라 개인투자조합이 투자한 업체가 부담하여야 하는 의무를 제3자가 연대하여 부담하게 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제3자에게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행위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투자계약에서 정한 선행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금을 납입하게 함으로써 투자의 효력을 발생하게 한 경우

나. 투자계약에서 정한 진술과 보장 사항이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

다. 투자금의 사용 용도를 위반한 경우

라. 투자계약에 반하여 이해관계인이 주식을 처분한 경우

5.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제27조(창업기획자의 행위제한) ① ---

---. -----

그리하지 아니하다.

1. 2. (생략)

<신설>

3. (생략)

②·③ (생략)

제39조(벤처투자회사의 행위제한) ① 벤처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벤처투자회사의 자산 운용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1. 2. (현행과 같음)

2의2. 투자계약에 따라 창업기획자가 투자한 업체가 부담하여야 하는 의무를 제3자가 연대하여 부담하게 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제3자에게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행위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투자계약에서 정한 선행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금을 납입하게 함으로써 투자의 효력을 발생하게 한 경우

나. 투자계약에서 정한 진술과 보장 사항이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

다. 투자금의 사용 용도를 위반한 경우

라. 투자계약에 반하여 이해관계인이 주식을 처분한 경우

3.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39조(벤처투자회사의 행위제한) ① -

-----.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2. (생략)

<신설>

3. (생략)

② (생략)

제52조(벤처투자조합 업무의 집행 등)

① (생략)

② 업무집행조합원은 벤처투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벤처투자조합

-----.

1. 2. (현행과 같음)

2의2. 투자계약에 따라 벤처투자회사가 투자한 업체가 부담하여야 하는 의무를 제3자가 연대하여 부담하게 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제3자에게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행위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투자계약에서 정한 선행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금을 납입하게 함으로써 투자의 효력을 발생하게 한 경우

나. 투자계약에서 정한 진술과 보장 사항이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

다. 투자금의 사용 용도를 위반한 경우

라. 투자계약에 반하여 이해관계인이 주식을 처분한 경우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52조(벤처투자조합 업무의 집행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의 자산 운용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4. (생략)

<신 설>

5. (생략)

③ · ④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4의2. 투자계약에 따라 벤처투자조합
이 투자한 업체가 부담하여야 하
는 의무를 제3자가 연대하여 부담
하게 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제3
자에게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행
위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투자계약에서 정한 선행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금을 납입하게 함으로써 투자의 효력을 발생하게 한 경우

나. 투자계약에서 정한 진술과 보
장 사항이 거짓으로 확인된 경
우

다. 투자금의 사용 용도를 위반한
경우

라. 투자계약에 반하여 이해관계인
이 주식을 처분한 경우

5.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현행법에 따르면 “벤처투자”란 창업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에 투

자하는 것을 말하고, “투자”에는 주식회사의 주식 인수, 유한회사 등에 대한 출자 인수 등 지분 투자방식뿐만 아니라 무담보전환사채·무담보교환사채·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 등 채권형 투자방식도 해당함¹⁾).

현재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은 현행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한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고시인 「벤처투자회사 등록 및 관리규정」 및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은 투자계약에 따라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이 투자한 업체가 부담하여야 하는 의무를 제3자가 연대하여 부담하게 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음²⁾.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주식회사의 주식, 무담보전환사채, 무담보교환사채 또는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

나.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의 출자 인수

다. 중소기업이 개발하거나 제작하며 다른 사업과 회계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업의 지분 인수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지분 인수

라. 투자금액의 상환만기일이 없고 이자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계약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의 체결

마. 무담보전환사채의 발행을 사전에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조건부지분전환계약의 체결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방식에 준하는 것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식

2. “벤처투자”란 창업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또는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에게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39조(벤처투자회사의 행위제한) ① 벤처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벤처투자회사의 자산 운용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투자하는 행위

2.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행위. 다만, 담보권 실행으로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그 밖에 벤처투자회사의 설립목적을 해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판례³⁾는 사인 간 자유로이 체결할 수 있는 계약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것은 단순한 절차 규정이 아니라 국민의 실체적 권리·의무를 형성하거나 변경하는 실체법적 규율이라고 보고 있고, 법제처의 『법령 입안 심사 기준』⁴⁾에서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련된 실체적 사항을 고시 등 행정규칙에 위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다만 전문적·기술적 성격을 가지거나 경미하여 수시로 개정이 요구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따라서, 현재 중소벤처기업부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의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투자계약 체결에 대한 제한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제39조제1항제2호의2 및 제52조제2항제4호의2의 개정규정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

한편, 개정안 제14조제2항제4호의2 및 제27조제1항제2호의2는 개인

제25조(벤처투자회사의 행위제한) 법 제3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0. 그 밖에 벤처투자회사의 자산 운용의 건전성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거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직접적·간접적 거래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벤처투자회사 등록 및 관리규정」

③ 영 제25조제10호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투자계약에 따라 벤처투자회사가 투자한 업체가 부담하여야 하는 의무를 제3자가 연대하여 부담하게 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제3자에게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행위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투자계약에서 정한 선행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금을 납입하게 함으로써 투자자의 효력이 발생하게 한 경우

나. 투자계약에서 정한 진술과 보장 사항이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

다. 투자금의 사용 용도를 위반한 경우

라. 투자계약에 반하여 이해관계인이 주식을 처분한 경우

3) 대법원 1991.12.24. 선고 90다12243 전원합의체 판결

4) 법제처, 「법령 입안 심사 기준」, 2023.12, p.22.

투자조합 및 창업기획자에 대하여 제3자에게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현재 개인투자조합 및 창업기획자에 대해서는 연대책임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개인투자조합 및 창업기획자가 기업의 대표, 최대주주 등에게 고의·과실이 없더라도 투자금 반환 등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개정안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대표자 등이 기업을 대신해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개인투자조합 및 창업기획자가 투자계약을 체결할 때 대표이사 또는 최대주주 등 제3자에게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것을 제한할 경우에는, 개인투자조합 및 창업기획자의 입장에서 투자금 회수를 위한 보전의 수단에 제약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투자위험의 증가에 따라 보수적인 투자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담보력이 없는 벤처·창업기업의 입장에서 연대보증을 통해서라도 투자를 받을 수 있었던 환경이 악화될 수도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임.

중소벤처기업부는 건전한 벤처투자 시장 문화가 자리 잡고 스타트업이 자유롭게 창업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연대책임 부과 제한을 제도화하려는 개정안에 찬성한다는 의견임.

2. 부칙(시행일 및 적용례)

현행	개정안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제1항제2호의2 및 제52조제2항제4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대책임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2항제4호의2 및 제27조제1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투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개정안은 부칙 제1조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9조제1항제2호의2 및 제52조제2항제4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은 현재에도 「벤처투자회사 등록 및 관리규정」 및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에 따라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투자계약 체결에 대한 금지·제한을 받고 있으므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더라도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임.

또한 개정안은 부칙 제2조에 제14조제2항제4호의2 및 제27조제1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투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연대책임 제한에 관한 적용례를 두고 있으므로, 개인투자조합 및 창업기획자가 이 법 시행 이전에 체결한 투자계약과 관련한 혼란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문 의 처
02) 6788-5459